

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방안 마련 · 시행

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(☎ 044-201-3779)

▶ 전국적으로 다수가 산재되어 있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정비를 위한 「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이 시행될 예정(2014년 5월 23일)이다.

- 국토교통부장관이 실태조사,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시·도지사가 구체적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방치건축물별 상황·여건에 맞는 방법*을 적용하여 정비하게 된다.

* 철거명령, 공사비용 보조·융자, 분쟁조정, 직접 취득·정비 등

▶ 동 법의 시행을 통해,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기반이 구축되어 국토미관개선 및 안전확보 등과 함께 국민의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☞ (참고)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국토교통뉴스)보도자료)정부,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팔 권고 나선다.

<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>

- ▶ 추진배경 :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현장의 미관 개선, 안전 확보 및 국토이용 효율성 제고
- ▶ 주요내용
 - ① 국토교통부장관 수립하는 기본계획수립 등을 토대로 시도지사가 방치건축물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
- ▶ 시행일 : 2014.5.